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46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김현정 • 모경종 • 민병덕

민형배 • 박상혁 • 이광희

이상식 · 정성호 · 정준호

한정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 •	제16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 ·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	③
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, 부채	<u>재무상태표</u>
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	
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	
정하여 회계처리한다.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